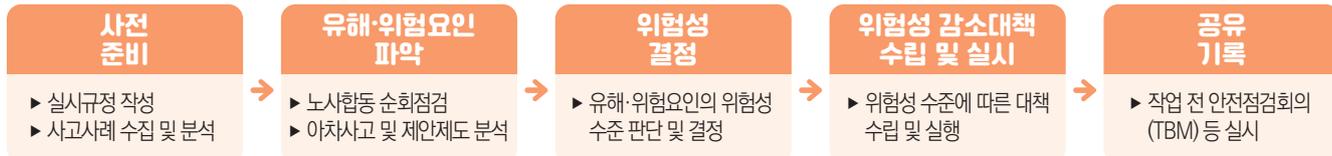

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,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

위험성평가가 뭔가요?

-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**사업주가 주도하여 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**을 의미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9호)



위험성평가를 하고싶는데 도움받을 수는 없나요?

-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**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무료로**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위험성평가 인정은 뭔가요?

-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**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**하고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서를 발급합니다.

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은 뭐가있나요?

안전보건공단

- 산재보험요율 20% 인하** (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)
※ 산재보험요율 인하 적용기간 : 위험성평가 인정 3년 (인정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일괄계산하여 적용)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**1,000만원 추가 지원** 등

기술보증기금

-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 및 보증요율 0.2%p 감면

무역보험공사

- 단기수출보험·수출신용 한도 1.5배 우대 및 보증(험) 20% 할인 등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-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(60억→100억)



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내

구분	위험성평가 컨설팅	위험성평가 인정
개요	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	사업장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충족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 발급
신청 방법	▶ 전 업종(건설업 제외) :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▶ 건설업종 :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미만 건설공사	▶ 전 업종(건설업 제외) :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▶ 건설업종 :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미만 건설공사
비고	▶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에서 신청 (사업장회원 회원가입 필요) ※ 공단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	



📢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-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교육 이수부터 위험성평가 인정까지 각 단계별로 실시
-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면 바로 인정심사 신청 가능



※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함. 다만, 위험성평가 인정 여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임

📢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안내

구분	사업주 교육		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(16H)
	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(2H)	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(4H)	
교육기관	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		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
신청방법	안전보건교육포털 (https://www.koshats.or.kr)에서 신청가능 		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(http://kras.kosha.or.kr)에서 신청 가능 
비고	-	교육이수 시 산재보험요율 10% 인하	교육이수 시 당해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※ 산재보험요율 인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

📢 안전보건공단 문의처

구분	관할지역	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	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
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 종로구.중구.동대문구.서대문구.은평구.마포구.용산구.서초구.강남구	02-6711-2895	02-6711-2913
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 강서구.양천구.영등포구.구로구.금천구.관악구.동작구	02-6924-8738	02-6924-8721
서울동부지사	서울특별시 성동구.광진구.송파구.강동구.종로구.노원구.강북구.도봉구.성북구	02-2086-8024	02-2086-8016
강원지역본부	강원도 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	033-815-1022	033-815-1058
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 및 평창군	033-820-2551	032-820-2552
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605	051-520-0554
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	052-226-0525	052-226-0513
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 제외)	055-269-0510	055-269-0516
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	055-371-7543	055-371-7501
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 화순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장성군, 영광군 및 함평군	062-949-8769	062-949-8714
전북지역본부	전라북도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완주군, 진안군 및 무주군	063-240-8545	063-240-8525
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 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 및 고창군	063-460-3623	063-460-3614
전남지역본부	전라남도 목포시, 무안군, 영암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장흥군, 진도군 및 신안군	061-288-8731	061-288-8721
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 및 보성군	061-689-4951	061-689-4915
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13	064-797-7505
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-0542	032-510-0644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	031-828-1942	031-828-1922
경기중부지사	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	032-680-6536	032-680-6556
고양파주지사	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	031-540-3844	031-540-3814
경기지역본부	경기도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	031-259-7263	031-259-7194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 및 시흥시	031-481-7536	031-481-7559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 및 양평군	031-785-3229	031-785-3317
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, 동구, 북구, 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, 경산시 및 청도군, 군위군	053-609-0553	053-609-0570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서구, 남구, 달서구, 달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) 고령군 및 성주군	053-650-6822	053-650-6815
경북지역본부	경상북도 구미시, 김천시, 영주시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, 봉화군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 및 청송군	054-478-8023	054-478-8057
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 및 울진군	054-271-2042	054-271-2015
대전세종광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 및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	042-620-5656	042-620-5672
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음성군, 단양군 제외)	043-230-7123	043-230-7117
충북동부지사	충청북도 충주시, 제천시, 음성군, 단양군	043-849-1041	043-849-1012
충남지역본부	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 및 예천군, 태안군	041-570-3443	041-570-3409